

대전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가단1713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서진

변 론 종 결 2020. 6. 25.

판 결 선 고 2020.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D, E, F, G, H는 1985. 11. 18. 충북 옥천군 I, J, K, L 각 임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각 1/7지분씩 공유하였고, 피고가 다른 공유자들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관리하였다.

나. M은 2016. 10. 10.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7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작성하였다. 다. M은 2016. 7. 29.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1. 30. 피고 및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198,000,000원을 각 1/7씩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6. 11. 30. 피고에게 38,6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M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 태양광발전설비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에 대하여 일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민원을 제기할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 지급되는 금원 일금 40,000,000원은 민원합의 및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지급되는 민원 합의금 및 수수료 지급함을 확인 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 각서 및 민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M은 2017. 5. 1. 옥천군수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2018. 1. 28.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받았다. M이 옥천군수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2471호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10. 11.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항소, 상고를 거쳐 201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상 태양광발전설비 신축공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을 해결할 때까지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므로 이를 대비하여 피고에게 태양광발전설비 신축공사를 할 경우 피고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를 작성하고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M이 옥천군에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불허가되었고, 행정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0,000,000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4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원·피고 사이의 합의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을 구하는 위 4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원 합의금의 성격과 더불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에 대한 부동산 매매 수수료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세진